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09

발의연월일 : 2022. 3. 21.

발 의 자:주철현·권인숙·김두관

민형배 · 서삼석 · 양정숙

윤재갑 • 이병훈 • 이원택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(이하 "식품명인"이라 함)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「식품위생법」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함.

이에 식품명인이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	제14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
및 지원 등) ① ~ ⑤ (생 략)	및 지원 등) ① ~ ⑤ (현행과
	같음)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	6
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	
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	
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	
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	
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
	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
	그 형이 확정된 경우
⑦ ~ ⑪ (생 략)	⑦ ~ ① (현행과 같음)